

프랑스의 실업 보험 개혁 : 자영자를 포함하여 전체 취업자로 확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프랑스 의회는 2018년 9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loi pour la liberté de choisir son avenir professionnel)”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제2장은 “더욱 보편적이고 공정한 실업 급여”라는 제목하에 자영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기존에는 임금 노동자만을 실업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두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서 자영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로 그 대상을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 액이나 소득 대체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시행 규칙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실업 급여는 조세로 충당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와 형평성을 맞추어 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실업 보험료는 폐지된다. 단, 사용자가 부담하던 임금의 4.0% 실업 보험료는 폐지되지 않았다. 구직자에게 지급될 실업 급여는 모든 취업자가 납부하는 일반 사회 기여금(Contribution Social Generale:CSG)이라는 일종의 사회 보장세의 인상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실업 보험의 보호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고 그 재원을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이 이번 개혁 입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전에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다만, 법률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최소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만 정했을 뿐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 법의 적용에 따라 노사가 고용 보험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교섭을 할 때 정해질 예정인데, 5년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정될 때까지 교섭 과정에서 노사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프랑스의 실업 보험 개혁은 임금 노동자를 넘어 모든 취업자로 적용 대상을 넓혔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원리를 실현한 것이다. 나아가 그 재원을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은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 보험 제도 원리를 따라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임금 노동자와 자영자의 경계에 서있는 종속적 자영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굵직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물줄기를 돌렸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급여 수준이 얼마나 될지, 이를 위해 사회 보장세는 얼마나 인상될지, 그리고 자발적 이직자를 비롯하여 구직자가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다른 조건들은 무엇일지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한 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실업 급여 대상 확대가 실업 보험 지출을 100만유로 줄이겠다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어떤 식으로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2018년 9월 5일 제2018-771호 법¹⁾

제2장 더욱 보편적이고 더욱 공정한 실업 급여

제1절 새로운 수급권의 창설 및 취약 계층의 보호

제1관 직업적 경로 및 이동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권리의 창설

제49조

I. 노동 법전 L.5421-1조²⁾ 및 L.5421-2조³⁾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5421-1조. 재취업 또는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에 더하여,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는 본 장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체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L.5421-2조. 대체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실업 급여
2. 제3절에서 규정하는 연대 수당
3. 제4절에서 규정하는 자영업자 실업 급여 및 특별 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타 수당

II. 노동 법전 L.5422-1조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5422-1조. I.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로서 연령 요건과 직전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운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 급여 수급권을 갖는다.

1. 비자발적 이직 또는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고용 보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비자발적 이직으

* 이 법의 내용은 2018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노동 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 연구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 설계 및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일부분이며, 해당 연구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임을 밝혀 둔다.

- 1) Loi n° 2018-771 du 5 septembre 2018 pour la liberté de choisir son avenir professionnel, JORF n° 0205 du 6 septembre 2018.
- 2) 재취업 또는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에 더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노동 법전 L.1237-11조 내지 L.1237-15조 또는 건설업 법전 L.421-12-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및 노동 법전 L.1237-17조 내지 L.1237-19-1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로서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는 본 장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체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3) 대체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절에서 규정하는 실업 급여
 2. 제3절에서 규정하는 연대 수당
 3. 제4절에서 규정하는 특별 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타 수당
- 4)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노동 법전 L.1237-11조 이하 또는 건설업법전 L.421-12-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및 노동 법전 L.1237-1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로서 연령 요건과 직전 취업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실업 급여 수급권을 갖는다.

로 간주되는 이직을 한 자

2. 노동 법전 L.1237-11조 내지 L.1237-16조, 또는 건설업 법전 L.421-1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자

3. 노동 법전 L.1237-17조 내지 L.1237-19-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자

II. 위 조항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L.1237-1조에서 말하는 사직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을 한 근로자로서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역시 실업 급여 지급권을 갖는다.

1. 이직일 이전 취업에 관한 특별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직업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직 계획 또는 창업 또는 사업의 재개 계획이 있는 자. 위 계획의 진실성과 진지성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L.6323-17-6조에서 말하는 지역별 노사 공동 직업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III. 노동 법전 제5편 제4권 제2장의 표제⁵⁾ 및 노동 법전 L.2145-9조의 제2항⁶⁾ 및 L.5425-9조의 제1항⁷⁾에서 “비자발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제1부관 사직한자의 고용 보험 가입

제50조

I. 노동 법전 L.5422-1조⁸⁾ 다음에 다음과 같이 L.5422-1-1조를 추가한다.

L.5422-1-1조. L.5422-1조의 II에 따라 실업 급여를 향유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사직에 앞서 L.6111-6조에 따라 동조에서 말하는 기관 등에 직업적 전망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 다만 고용 지원 사무소 및 L.5314-1조에서 말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필요한 경우 직업적 전망에 관한 조언을 하는 기관 등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계약의 범위 안에서 전직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조언 기관 등을 도움을 얻어 L.5422-1조의 II의 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을 작성한다.

II. 노동 법전 제5편 제4권 제2장 제6절 제1관의2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1관의3을 추가한다.

5)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급여

6)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일 년에 12일에서 18일의 범위 안에서 직업 교육 훈련의 차원에서 수급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대체 소득을 받는다.

7)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대체 소득 수급권자인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 관청이 승인하는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8)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노동 법전 L.1237-11조 이하 또는 건설업 법전 L.421-12-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및 노동 법전 L.1237-1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가운데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로서 연령 요건과 직전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실업 급여 지급권을 갖는다.

제1관의3 사직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특칙

L.5426-1-2조. I. L.5421-3조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가 구직자로 등록하고 L.5422-1조의 II의 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전직 계획을 실현하는 기간 동안에는 L.5422-1조의 II에 따라 실업 급여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직 노력 요건이 충족된다.
II. 고용 지원 사무소는 실업 급여 수급권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L.5422-1조의 II의 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현실성을 감독한다.
위 필요한 조치의 현실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하지 못한 자는 L.5412-1조의 3호의 (f)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구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고용 보험에 관한 협약은 실업 급여 수급권자가 잔여 실업 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제2부관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

제51조

I. 노동 법전 제5편 제4권 제2장 제4절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4관을 추가한다.

제4관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

L.5424-24조. 사회 보장 법전 L.611-1조⁹⁾, 농어업 법전 L.722-1조¹⁰⁾ 및 L.731-23조¹¹⁾, 사회 보장 법전 L.311-3조의 4호 내지 6호, 11호, 12호, 23호, 30호 및 35호¹²⁾, 사회 보장 법전 L.382-1조¹³⁾에

- 9) 1. 농어업인 노령 및 유족 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임금 근로자
2. 담배 소매상인
3. 자격증을 취득한 스키 강사
4. 성년 후견인의 자격을 승인 받은 자
5. 관광업 법전에서 규정하는 민박 사업자로서 과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6. 숙박 시설 임대 사업자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7. 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10) 농업 부문의 비임금 근로자
- 11) 농업 부문의 사업주
- 12) 다음 각 호의 자는 사용자 혹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거나, 일에 필요한 도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사료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L.311-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사회 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4. 비사업적 보험 모집인
 5. 하나 이상의 보험 대리점을 위하여 고객 관리 및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대리인
 6. 협동 조합의 비임금 임원 및 상사 회사 지점장
 11. 전체 자본금의 절반 미만을 소유한 유한 책임 회사 임원
 12. 주식 회사의 이사
 23. 단순 주식 회사(SAS)의 임원
 30. 협동 조합 은행의 은행장
 35. 숙박 시설 임대 사업자 또는 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13) 문학, 음악, 방송, 영화, 미술, 사진 분야의 작가

서 말하는 자는 본 관의 적용을 위하여 자영업자로 본다.

L.5424-25조. 직전 취업 상태가 자영업자였던 자로서 소득, 직전 취업 기간, 직전 취업 소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갖는다.

1. 상법전 L.641-1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업이 청산 절차 개시 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상법전 L.64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은 제외한다.
2. 상법전 제6권 제3장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로서, 법원에 의하여 회생 계획의 채택이 상법전 L.631-19-1조에 따른 이사의 교체에 구속되는 경우.

L.5424-26조. L.5422-4조¹⁴⁾와 L.5422-5조¹⁵⁾는 자영업자 실업 급여에도 적용된다.

L.5424-27조.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 수급권을 위한 재원, 직전 취업 기간, 직전 취업 소득에 관한 요건 등 본 관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액과 수급 기간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2. 자영업자 실업 급여와 실업 급여의 조정에 관한 시행 방안은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¹⁶⁾으로 정한다.

L.5424-28조.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를 위한 재원은 L.5422-9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일체의 조세¹⁷⁾로만 충당한다.

II. 노동 법전 제5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L.5312-1조 제4호¹⁸⁾에서 “실업 급여” 다음에 “및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를 추가한다.
2. L.5421-4조 제3호¹⁹⁾에서 “및 사회 보장 법전 L.351-1-4조”를 “사회 보장 법전 L.351-1-4조 및 L.643-3조 II와 III 및 L.723-10-1조, 그리고 농어업 법전 L.732-18-1조 내지 L.732-18-3조”로 개정한다.
3. L.5422-3조 제1항²⁰⁾에서 “L.5422-9조 및 L.5422-11조”를 “L.5422-9조 제1호 및 L.5422-11조”로 개정한다.
4. L.5423-1조²¹⁾에서 “또는 L.5423-7조에서 규정하는 직업 교육 훈련 종료 수당”을 삭제한다.

14)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고용 지원 사무소에 실업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실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실업 급여의 지급 신청이 있는 후에 한다. 실업 급여 지급 청구권의 시효는 고용 지원 사무소에서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15) 잘못 지급된 실업 급여의 환불 소송 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한다. 부정 수급의 경우에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이 기간은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16) 고용 보험에 관한 단체 협약을 말한다.

17) 고용 보험 관리 기관(위네티)에 구속되는 조세를 말한다.

18) 고용 지원 사무소의 실업 급여 지급 사무에 관한 규정이다.

19) 사회 보장 법전 L.161-17-4조, L.351-1-1조, L.351-1-3조 및 L.351-1-4조 및 1999년도 사회 보장 예산안 제41조 제3항 및 제7항의 적용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수급하는 자에게는 실업 급여의 지급을 중지한다.

20) 실업 급여는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수에 따라 계산하든지, 또는 L.5422-9조 및 L.5422-11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의 계산에 반영되는 보수에 따라서 계산한다.

21) 실업 급여 또는 L.5423-7조에서 규정하는 직업 교육 훈련 종료 수당 수급권이 만료된 실업자로서 이전 취업 기간 및 재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 연대 수당 수급권을 갖는다.

5. L.5425-1조 제1호²²⁾에서 “실업 급여” 뒤에 “및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추가한다.
6. L.5427-1조 제2항²³⁾에서 “실업 급여” 뒤에 “및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추가한다.

III. 사회 보장 법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L.135-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문에서 “및 농업 임금 근로자 체제”를 “농업 임금 근로자 체제, 농업 비임금 근로자 체제, 자유업 종사자의 노령 연금 체제 및 프랑스 변호사 연금 공단”으로 개정한다.
 - b) (b)에서 “및 L.5423-7조”를 “L.5423-7조 및 L.5424-25조”로 개정한다.
2. 제1권 제7장 제3절 제3관 제1부관에 다음과 같이 L.173-1-4조를 추가한다.

L.173-1-4조. 피보험자가 복수의 노령 연금 체제에 연속적으로나 번갈아가며 또는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의 총족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체제는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3. L.643-3조 뒤에 다음과 같이 L.643-3-1조를 추가한다.

L.643-3-1조. 피보험자가 노동 법전 L.5424-25조에서 말하는 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자유업 종사자 노령 연금 체제의 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한다.

4. L.653-3조 뒤에 다음과 같이 L.653-3-1조를 추가한다.

L.653-3-1조. 피보험자가 노동 법전 L.5424-25조에서 말하는 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변호사 노령 연금 체제의 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한다.

IV. 농어업 법전 L.732-21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보험자가 노동 법전 L.5424-25조에서 말하는 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연금 수급권의 개시를 위하여 고려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2관 취약 계층의 보호

제52조

노동 법전 L.5422-12조 제2항²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용자의 기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 22) 본 장의 급여는, 악천후로 인하여 이직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하여 제4절 제2관에서 규정하는 급여를 제외하고, 일시적인 취업 또는 부분 취업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해지는 요건과 한계의 범위 안에서 수급하는 사회 보장 급여 또는 공공 부조 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
 1. 실업 급여의 경우에는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협약
 2. 연대 수당의 경우에는 시행령
- 23) 실업 급여 사무는 위네디의 계산을 위하여 고용 지원 사무소에서 담당한다.
- 24) 고용 보험 협약은 근로 계약의 종류, 그 기간, 그러한 종류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유, 근로자의 나이 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기여율을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1. 근로 계약 및 L.1251-1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 파견 계약의 해지 건수. 사직 및 L.1251-1조 제2호에서 말하는 파견 근로 계약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근로자는 L.5411-1조에서 말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근로 계약의 종류, 그 기간 또는 그러한 종류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유
3. 근로자의 나이
4. 사업의 규모
5. 사업이 속해 있는 업종

제53조

실험적으로 노동 법전 L.1242-2조 제1호²⁵⁾ 및 L.1251-6조 제1호²⁶⁾에 대한 예외로서,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복수의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간제 근로 계약 또는 하나의 파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실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위 실험은 사업의 통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목적과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위 실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위 제1항에서 말하는 업종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 및 파견 근로 계약의 체결 빈도, 기간의 장단 및 노동 법전 L.2253-1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항²⁷⁾에 관한 업종별 교섭의 결과에 관한 실험의 효과를 분석한다.

제2절 실업 급여의 새로운 구조

제1관 고용 보험 체제의 재정

제54조

I. 노동 법전 L.5422-9조 제1항²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실업 급여 및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사용자의 기여금
2. 필요한 경우, 제4절 제3관에서 말하는 영화, 방송 및 공연 업종에 속하는 임금 근로자들의 기여금

25) 기간제 근로 계약의 허용 사유 중 하나로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규정이다.

26) 파견 근로자 사용 사유 중의 하나로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규정이다.

27) 업종별 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의 하나로서, 기간제 근로 계약 및 파견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8) 실업 급여의 재원은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총보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3. 필요한 경우, L.5422-13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해외 파견 임금 근로자들의 기여금
 4. 필요한 경우,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의 적용 범위의 해외 확장 범위에 속하는 임금 근로자들의 기여금
 5. L.54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관²⁹⁾에 전부 또는 일부 귀속되는 일체의 조세. 특히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재정을 위하여 그러하다.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기여금은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세전 총보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II. 노동 법전 제5편 제4권 제2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L.5422-10조 제2항³⁰⁾에서 “같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 의하여”를 “L.5422-9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 의하여”로 개정한다.
2. L.5422-14조 제1항³¹⁾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기여금”을 “L.5422-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기여금”으로 개정한다.
3. L.5422-24조³²⁾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맨 앞 부분을 “I. 재원”으로 개정한다.
 - b) “징수된 액”을 “재원의 액”으로 개정한다.
 - c)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Pole emploi)”로 개정한다.
 - d) 다음과 같이 II를 추가한다.

II. 본 조의 I의 적용과 관련하여 L.5422-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한 평가는 이 기여금에 적용될 수 있는 감면 제도의 적용 이전을 의미한다.

4. L.5424-20조³³⁾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항에서 “비자발적으로”를 삭제하고, “L.5422-9조에서 규정하는”을 “L.5422-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로 개정한다.
 - b) 제2항 제1문에서 “L.5422-9조”를 “L.5422-9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개정한다.
 - c)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한다.

29) 위네딕(Unédic)을 말한다.

30) 같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 의하여 납부된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계산을 위하여 공제될 수 있다.

31) 보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기여금의 계산에 반영되는 보수를 신고한다.

32)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은 징수된 액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 보험 협약으로 정하는 부분을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예산에 충당하며, 그 배분은 위 기관의 이사회에서 매년 정한다.

33) 영화, 방송 또는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지급되는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의 조정에 따라, 위 실업 급여는 L.5422-9조에서 규정하는 기여금 외에 해당 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특별 기여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위 특별 기여금은 고용 보험 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상한액의 범위에서 총보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위 특별 기여금은 L.5422-9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 L.5427-1조에서 말하는 징수 기관이 징수하고 감독한다. 특별 기여금의 징수에 관한 분쟁은 L.5422-16조에서 규정하는 관할 규칙에 따른다.

본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 기여금에 속하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의 해지는 L.5422-12조 제1호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위 제1호의 적용에 따른 기여금의 할증 또는 할인은 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5. L.5427-1조³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3항³⁵⁾에서 “L.5422-9조 및 L.5422-11조”를 “L.5422-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L.5422-11조”로 개정한다.

b) (a)³⁶⁾에서 “동 법전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를 유럽 공동체 내에서 이동하는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것에 관한 1971년 6월 14일 유럽 이사회 제1408/71호”를 “사회 보장 제도의 조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제883/2004호”로 개정한다.

c) (c)³⁷⁾를 삭제한다.

d) (e)³⁸⁾에서 “동 법전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6. L.5429-2조³⁹⁾에서 “L.5422-9조”를 “L.5422-9조 제2호”로 개정하고, “2년의 징역 및 3,750유로의 벌금”을 “사회 보장 법전 L.24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으로 개정한다.

III. 사회 보장 법전 L.213-1조 제5호에서 “L.5422-9조, L.5422-11조 및 L.3253-18조”를 “L.3253-18조, L.5422-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L.5422-11조”로 개정한다.

IV. 사회 보장 법전 L.243-7조 제2항의 제1문 및 제3항에서 “노동 법전 L.5427-1조 (c)와 (e)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제55조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노동 법전 L.5422-24조에 따라 고용 지원 사무소의 예산에 귀속되는 총기여금은 본 법 이전에 동 법전 제5편 제4권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34) 고용 보험의 관리 기관으로서 위네딕(Unédic)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고용 보험 협약의 당사자들은 그 선택으로 고용 보험의 관리를 사법상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사법상 위탁 관리 기관이 곧 위네딕이다.

35) L.5422-9조 및 L.5422-11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의 징수는 위네딕의 계산을 위하여 사회 보험료와 가족 수당 보험료 징수청 및 사회 보장 법전 L.213-1조 및 L.752-1조에서 말하는 사회 보험 관리 공단에서 담당한다.

36) 기여금 징수 사무 처리 규정의 예외로서, 해외 파견 근로자와 국경 근로자 및 선원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지원 사무소가 기여금 징수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37) 기여금 징수 사무 처리 규정의 예외로서, 두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방문 위탁 판매인들의 기여금 징수 사무를 방문 위탁 판매인 사회 보험 관리 공단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38) 기여금 징수 사무 처리 규정의 예외로서, 영화, 방송 또는 공연 산업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기여금 징수 사무를 고용 지원 사무소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39) L.5422-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용자로서 3년의 기간 안에 누범인 경우에는 2년의 징역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관 운영

제56조

I. 노동 법전 L.5422-20조 제1항⁴⁰⁾에서 “L.5422-14조 내지 L.5422-16조” 다음에 “본 관, L.5422-9조 제 5호, L.5422-10조”를 추가한다.

II. 노동 법전 L.5422-20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L.5422-20-1조 및 L.5422-20-2조를 추가한다.

L.5422-20-1조.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의 승인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교섭하기 이전 또는 L.5422-25조에서 말하는 협약을 교섭하기 이전에 총리는 전국 차원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교섭 개요서를 이들 노동 조합과 사용자 단체에 교부한다. 이 교섭 개요서는 의회에도 동시에 제출한다.

교섭 개요서는 재정 추계에 관한 교섭 목표, 교섭 만료 시한 및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 보험 제도 개선 목표를 명시한다.

교섭 개요서는 재정 추계가 근거하고 있는 거시경제 상황, 앞으로 다가올 3 회계연도 동안 L.5422-9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일체의 조세의 예상 액을 제시한다. 다만 장차의 예산안 및 사회 보장 예산안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본 조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L.5422-20-2조. 고용 지원 사무소와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은 L.5422-20-1조 및 L.5422-25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의 작성 및 교섭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정보들을 국가 기관에 제공한다.

III. 노동 법전 L.5422-21조 마지막 항⁴¹⁾에서 “행정 관청”을 “총리”로 개정한다.

IV. 노동 법전 L.5422-22조⁴²⁾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5422-22조.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과 사용자 단체 사이에 전국 및 전산업 단위에서 교섭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위 협약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위 협약은 재정 추계와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L.5422-20-1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에서 정의하는 고용 보험 제도 개선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

V. 노동 법전 L.5422-23조⁴³⁾에서 “고용을 담당하는 장관”을 “총리”로 개정한다.

40) 본 절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들은, L.5422-14조 내지 L.5422-16조 및 L.5422-25조를 제외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41) 행정 관청의 승인을 받은 협약은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명령의 공고에 관한 요건에 따른다.

42) 고용 보험 협약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전국 및 전산업 단위에서 교섭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위 협약은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을 포함하면 안 된다. 특히 고용 감독, 일자리의 수급 균형, 이직한 근로자의 감독, 이직한 근로자의 직업 소개 또는 재취업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에 반하면 안 된다.

43) 고용 보험 협약이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모두에 의하여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

VI. 노동 법전 L.5422-25조⁴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5422-25조. 정부는 매년 늦어도 10월 15일 이전에 L.5427-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의회에 고용 보험의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기 재정 균형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 및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한다.

위 보고서에서 고용 보험의 재정 추계와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추계 사이에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경우, 또는 공공 재정 관리법의 범위에서 입법자가 정한 재정 추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 총리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대하여 총리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의 개정을 통해서 위 격차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총리는 L.5422-20-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위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교섭 개요서를 전달한다.

본 절 제5관의 규정들은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L.5422-2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총리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대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협약의 승인을 만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는 L.5422-20조 마지막 항을 적용한다.

VII. 노동 법전 L.5424-22조⁴⁵⁾ II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항 제1문⁴⁶⁾에 “이때, L.5422-20-1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와 재정 추계를 준수한다”를 추가한다.
2. 마지막 항 제2문⁴⁷⁾에 “위 L.5422-22조 제2항에 정한 요건에 따라”를 추가한다.

VIII. 노동 법전 L.5424-23조⁴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반대의 의사가 표명된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담당하는 장관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44) 고용 보험 관리 기관(위네디)은 매년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 3개년 재정 전망을 의회와 정부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고용과 실업의 변동에 관한 경기 요소가 고용 보험 재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시한다. 정부는 위 보고서 및 기타 처분 가능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12월 31일 이전에 위네디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의회에 고용 보험의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기 재정 균형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 및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한다.

45)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보험에 관한 특칙을 단체 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46) 교섭 개요서는 재정 추계 및 고용 보험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의 준수에 관한 교섭 목표를 명시한다.

47) 공연 예술 산업 앵테르미탕의 고용 보험에 관한 특칙을 정하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 조합이 이를 정한다.

48) 공연 예술 산업 앵테르미탕의 고용 보험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1. I의 제1문⁴⁹⁾ 및 IV⁵⁰⁾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2. III⁵¹⁾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를 “말하는 교섭 개요서들”로 개정하며, “L.5424-22조” 다음에 “및 L.5422-20-1조”를 추가한다.

제57조

본 법률이 공포된 후 그리고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한 후, 정부는 위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노동 법전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섭 개요서를 위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전달한다.

위 협약은 4개월의 기간 내에 교섭되고, 본 법 제56조에 의하여 개정된 노동 법전 제5편 제4권 제2장에서 정한 요건, 특히 동 법전 L.5422-25조 마지막 항에 따라 승인된다.

제1항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는 노동 법전 L.5422-20-1조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약 계층의 보호하고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 보험 제도 개선 목표를 규정하여야 한다. 교섭 개요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 실업 급여의 창설을 통해서 보험과 연대 사이의 조정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제3절 구직자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구직 의무의 효율성 강화

제1관 구직자 맞춤형 지원의 개선을 위한 지역별 실험

제58조

실험적으로 고용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노동 법전 L.5411-2조 및 L.5411-10조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직자가 동 법전 L.5411-1조에서 말하는 구직자 명부 등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때에 구직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만 구직자 명부 등록이 유지된다. 위 실험은 장애인인 구직자의 상황 및 구직자의 프랑수어 구사 수준을 고려한다.

위 실험은 2019년 6월 1일부터 18개월의 기간으로 실시한다.

위 실험과 그 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위 실험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의회에 전달된다.

49) 위 전문가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 사무를 대표하는 자,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대표자,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들로 구성한다.

50)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 및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은 전문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1) L.5424-20조에서 말하는 산업 전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가 위원회는 이 협약이 L.5424-22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에서 제시한 재정 추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2관 구직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들

제59조

I. 노동 법전 L.5411-6-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⁵²⁾ 제1문 및 제2문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은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하고, 제1문에서 “위에서 말한 기관”은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2. 제2항⁵³⁾에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필요한 경우 L.5422-1조 II 제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3. 제3항⁵⁴⁾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은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4.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추가한다.

구직자에게 개인별 재취업 계획을 통지하는 서면에는 합리적인 일자리 제안을 승락하거나 거절하는 것과 관련된 구직자의 권리 및 특히 고용 지원 사무소가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II. 노동 법전 L.5411-6-3조의 마지막 세 개의 조항⁵⁵⁾은 삭제한다.

III. 노동 법전 L.5411-6-4조⁵⁶⁾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5411-6-4조. 본 관의 규정 및 L.5412-1조 제2호의 규정은 구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받아들일도록 강제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과 해당 직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 수준. 다만 법정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 등 법률 및 협약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2)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구직자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 또는 위에서 말한 기관과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공공 고용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이 함께 작성하고 갱신한다. 이 경우 개인별 재취업 계획의 작성과 갱신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전달한다.

53)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구직자의 직업 교육 훈련, 숙련, 지식 및 경험, 개인적 및 가족 상황, 지역 노동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일자리의 종류와 특성 및 원하는 지역 그리고 기대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한다.

54)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공공 고용 서비스의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조치들, 특히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직업 교육 훈련 및 이동성 지원에 관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55) 제2항은 3개월 이상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 숙련과 경험에 부합하고 종전 임금이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합리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보고, 6개월이 지나면 85퍼센트로 조정되고, 1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의 수준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면 합리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본다. 제3항은 6개월 이상 실업인 자에게 출퇴근 각 최대 1시간 이내의 거리 또는 최대 3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제4항은 구직자가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위 각 기간의 계산에 반영하여 그만큼 연장한다는 규정이다.

56) 본 관의 규정 및 L.5412-1조 제2호의 규정은 구직자에게 해당 지역과 해당 직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받아들일도록 강제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 등 법률 및 협약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서 구직 일자리를 전일제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단시간 일자리를 받아들일도록 강제할 수 없다.

2. 단시간 일자리. 다만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서 구직 일자리를 전일제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구직자의 직업 능력 및 숙련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

제3관 구직 감독의 이전 및 제재에 관한 규정들

제60조

I. 노동 법전 L.5312-1조⁵⁷⁾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호에서 “이를 위하여”를 삭제한다.
2. 제4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4호의2를 추가한다.

4의2. 본 편 제4권 제2장 제6절 제2관 및 제3관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대체 소득 지급 중지 결정,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결정.

II. 노동 법전 L.5412-1조⁵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호⁵⁹⁾에서 “또는 사업의 재개”를 “사업의 재개 또는 확장”으로 개정한다.
2. 제3호 (b)⁶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 교육 훈련에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자”
3. 제3호 (c)⁶¹⁾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자”를 “면담에 불참하는 자”로 개정한다.
4. 제3호 (d)⁶²⁾에서 “노동력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을 삭제한다.
5. 제3호 (e)⁶³⁾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 구직 지원 활동에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자”
6. 제3호 (f)⁶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 고용 지원 사무소의 사무에 관한 규정이다.

58) 구직자 등록 명부 삭제에 관한 규정이다.

59)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개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

60)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 교육 훈련에 불참하거나 L.5311-2조에서 말하는 서비스 기관 중의 하나가 제안하고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 포함되는 구직 지원 활동에 불참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

61) 정당한 이유 없이 L.5311-2조에서 말하는 서비스 기관 또는 이 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

62) 일자리 또는 특정한 유형의 일자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노동력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의료 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

63) 도제 계약 또는 인턴 계약의 제안을 거부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

64) 본 편 제1권 제3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편입 활동 또는 보조급 일자리의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

“(f) L.5426-1-2조 II에서 말하는 이행의 현실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하지 못하는 자”

III. 노동 법전 L.5421-3조 제1항⁶⁵⁾에서 “또는 사업의 재개”를 “사업의 재개 또는 확장”으로 개정한다.

IV. 노동 법전 제5편 제4권 제2장 제6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관의 표제⁶⁶⁾에서 “삭감, 정지 또는”을 삭제한다.
2. L.5426-2조 제1항⁶⁷⁾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5412-1조 제1호 내지 제3호, L.5412-2조 및 L.5426-1-2조 II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고용 지원 사무소에 의하여 대체 소득의 지급을 중지한다.

3. L.5426-5조 제1항⁶⁸⁾ 및 L.5426-7조 제2항⁶⁹⁾과 마지막 항⁷⁰⁾에서 “행정 관청”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4. L.5426-6조⁷¹⁾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문에서 “조세 및 국유 재산과 무관한 채권으로서 국가”를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 b) 제2문을 “L.5426-8-2조의 규정은 과징금의 징수에 적용된다”로 개정한다.
5. L.5426-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2호⁷²⁾에서 “요건” 다음에 “기간”을 추가하고, “삭감”을 삭제한다.
 - b) 제3호⁷³⁾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 c) 제4호⁷⁴⁾에서 “행정 관청”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하고, “부과하는”을 “부과하고 징수하는”으로 개정한다.

- 65) 구직자로 등록된 자가 스스로 또는 L.5311-2조에서 말하는 기관 중 하나의 제안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개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체 소득을 향유하기 위한 구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66) 대체 소득의 삭감, 정지 또는 중지.
- 67) L.5412-1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L.5412-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의하여 대체 소득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삭감한다.
- 68)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소송 및 벌칙의 적용과 별도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고의로 부정확하게 또는 불충분하게 신고를 하거나 급여의 수급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69) 행정 관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부정 수급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은 당연히 취소된다.
- 70) 행정 관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같은 사유로 벌금이 선고된 경우 과징금은 벌금에 합산한다.
- 71) 과징금은 조세 및 국유 재산과 무관한 채권으로서 국가가 징수한다.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부당 수급의 피해를 입은 기관 또는 기금에 이월한다.
- 72) L.5426-2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대체 소득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삭감될 수 있는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 73)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부당 수급된 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및 매월 지급되는 각종 명목의 급여 총액에서 부당 수급액의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 74) 행정 관청이 L.542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노동 법전 L.5422-4조 제1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조항을 추가한다.

고용 지원 사무소가 실업 급여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서면에는 이의 제기에 관한 기간과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62조

본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정부는 고용 보험에 관한 권리 비행사의 실태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4절 해외령에 적용되는 규정

제63조

I. 노동 법전 L.5524-2조⁷⁵⁾에서 “마요트 군에 가족 수당과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관한 2002년 2월 7일 제2002-149호”를 “마요트 군에서의 보건과 사회적 보호에 관한 2002년 3월 27일 제 2002-411호”로 개정한다.

II. 노동 법전 L.5524-3조⁷⁶⁾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에 “L.5422-20-1조 및 L.5422-20-2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를 추가한다.
2. 제2항에 “L.5422-20-1조 및 L.5422-20-2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를 추가한다.

III. 노동 법전 L.5524-10조⁷⁷⁾ 및 L.6523-3조⁷⁸⁾ 제2항에서 “비자발적으로”를 삭제한다.

IV. 노동 법전 L.5531-1조⁷⁹⁾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제5절 기타 규정

제64조

I. 노동 법전 L.1233-68조 제1항⁸⁰⁾에서 “제5편” 앞에 “L.5422-20-1조 및 L.5422-22조 제2항을 제외하

75) 마요트 군에 적용되는 특칙 규정이다.

76) 마요트 군에 적용되는 특칙 규정이다.

77) 해외령에 적용되는 특칙 규정이다.

78) 해외령에 적용되는 특칙 규정이다.

79) 해외령에 적용되는 특칙 규정이다.

80) 제5편 제4권 제2장 제2절 제5관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체결되고 승인된 협약은 정리 해고 후 재고용 지원 계약

고”를 추가한다.

II. 노동 법전 L.1235-4조⁸¹⁾에 다음과 같이 조항을 추가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을 위하여, 고용 지원 사무소의 장 또는 고용 지원 사무소의 장이 고용 지원 사무소 내에서 지명하는 자는 고용 지원 사무소,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 국가 또는 L.5424-1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계산을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과 요건에 따라, 최고를 한 후에 영장을 발부한다. 채무자가 위 영장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위 영장은 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저장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III. 노동 법전 제5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L.5312-13-1조 제1항 제1문⁸²⁾, L.5411-1조⁸³⁾, L.5411-2조 제2항⁸⁴⁾, L.5411-6조 제1문⁸⁵⁾, L.5411-10조 제1호⁸⁶⁾ 및 제2호 (b)⁸⁷⁾, L.5422-16조 제1항 제2문⁸⁸⁾, L.5424-2조 제1항 제2문⁸⁹⁾, L.5426-1조⁹⁰⁾, L.5427-2조⁹¹⁾ 및 L.5427-3조⁹²⁾, L.5427-4조⁹³⁾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2. L.541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정한다.

81) 차별에 의한 해고, 직장 괴롭힘에 의한 해고, 성적 괴롭힘에 의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정리 해고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기관에 환급할 것을 명한다. 환급액은 해고일로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지급된 실업 급여의 액으로 하며, 최대 6개월의 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지급 기관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급된 급여의 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 환급을 명한다.

82)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서 부정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고용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서하고 인준을 받는다.

83) 구직 중인 자로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구직자 명부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구직자의 자격을 갖는다.

84) 구직자는 구직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통지한다.

85) 당장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는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의하여 구직 지원을 받는다.

86) 구직자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정 변경 사항.

87) 사용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구직자의 재고용 또는 재취업, 직업 교육 훈련 참가 또는 구직자 명부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 변경에 대해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통지한 경우.

88) L.1233-66조, L.1233-69조 및 L.5427-1조의 (a)와 (e)의 적용을 위하여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장은 사회 보장 법전 L.244-9조에서 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89) 공공 기관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용 보험 관리 기관(위네디)에 실업 급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90) 구직 활동에 대한 감독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직원이 한다.

91) 사회 보장 기관의 직원은 급여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92) 구직자 명부 등록에 관한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고, L.5421-2조에서 규정하는 대체 소득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 보장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합칠 수 있다.

93) L.5421-2조에서 규정하는 대체 소득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 제작, 방송 및 공연 산업의 연차 유급 휴가 관리 공단 및 해당 산업의 협약상 노령 연금 체제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합칠 수 있다.

In Depth Analysis

- a) 제1항⁹⁴)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 b) 제2항⁹⁵)에서 “위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 c) 제2항에 “구직자 명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류증과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3. L.5413-1조⁹⁶)에서 두 번째 나오는 “등록을”을 삭제한다.
4. L.542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항 제1문⁹⁷) 다음에 “또한 필요한 경우 수급 기간은 수급자가 직업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b) 제1항 제2문⁹⁸)에서 “수급 기간”을 “이 기간”으로 개정한다.
 - c) 제2항⁹⁹)을 삭제한다.
5. L.542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항¹⁰⁰)에서 “비자발적으로”를 삭제한다.
 - b) 제1항 및 제2항 제2문¹⁰¹)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6. L.5422-16조 제1항 제1문¹⁰²)에서 “L.5422-9조, L.5422-11조”를 “L.5422-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L.5422-11조”로 개정한다.
7. L.5423-4조¹⁰³)를 폐지한다.
8. L.5424-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항¹⁰⁴)에서 “비자발적으로”를 삭제한다.

- 94)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해당 신청자의 체류증과 노동 허가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
- 95)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기관은 국가 기관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다.
- 96) 구직자 명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는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전 제441-6조에서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 97)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은 수급자의 나이 및 직전 취업 활동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98) 위 수급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보다 짧을 수 없다.
- 99)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과의 합의로 유급의 직업 교육 훈련 활동에 사용된 시간은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한다.
- 100)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실업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 101) 실업 급여 지급 청구권의 시효는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102) L.5422-9조, L.5422-11조 및 L.5424-20조에서 규정하는 기여금은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위네딕)의 계산을 위하여 L.5427-1조에서 말하는 징수 기관이 징수하고 감독하며, 이 경우 임금 근로자 사회 보험료의 징수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 103) 직업 수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연대 수당을 받기 위한 직전 취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협약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연대 수당의 직전 취업 요건 및 수급 기간과 수급률에 대해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104) 영화, 공연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인 및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실업 급여 수급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민 연대의 차원에서 특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b) 제4항 제2문¹⁰⁵⁾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 9. 제4권 제2장 제6절 제1관의2 표제¹⁰⁶⁾에서 “취업들”을 “취업”으로 개정한다.
- 10. L.5426-8-3조¹⁰⁷⁾에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을 “고용 지원 사무소”로 개정한다.
- 11. L.5428-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항¹⁰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 지원 사무소가 지급하는 수당, 부조 및 일체의 급여는 양도 금지 및 압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과 동일한 요건과 한계 안에서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다.
 - b) 제2항¹⁰⁹⁾에서 “특별 연대 수당 및 일시 대기 수당”을 “특별 연대 수당”으로 개정한다.

제65조

본 장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II 제5호 (c) 및 제57조는 제외한다.

<노동 법전 신규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L.1233-68조. 제5편 제4권 제2장 제2절 제5관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체결되고 승인된 협약은 정리 해고 후 재고용 지원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정한다.	L.1233-68조. L.5422-20-1조 및 L.5422-22조 제2항을 제외하고, 제5편 제4권 제2장 제2절 제5관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체결되고 승인된 협약은 정리 해고 후 재고용 지원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정한다.
L.1235-4조. 차별에 의한 해고, 직장 괴롭힘에 의한 해고, 성적 괴롭힘에 의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정리 해고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기관에 환급할 것을 명한다. 환급액은 해고일로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지급된 실업 급여의 액으로 하며, 최대 6개월의 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지급 기관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급된 급여의 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 환급을 명한다.	L.1235-4조. 차별에 의한 해고, 직장 괴롭힘에 의한 해고, 성적 괴롭힘에 의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정리 해고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기관에 환급할 것을 명한다. 환급액은 해고일로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지급된 실업 급여의 액으로 하며, 최대 6개월의 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지급 기관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급된 급여의 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 환급을 명한다.

105) 위 특별 실업 수당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그 관리는 국가와 체결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106) 신고하지 아니한 취업들의 기간들

107)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은 스스로의 계산, 국가의 계산 또는 L.5424-1조에서 말하는 사용자(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계산을 위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 부조 및 일체의 급여에 대한 환급 조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108) 정리 해고 후 재고용 지원 계약의 차원에서 수급한 급여, 실업 급여 및 조기 은퇴 급여는 임금과 동일한 조건과 한계 안에서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다.

109) 위 급여들 및 특별 연대 수당 및 일시 대기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를 면제한다.

In Depth Analysis

개정 전	개정 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을 위하여, 고용 지원 사무소[Pôle emploi.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고용 지원 사무소의 장이 고용 지원 사무소 내에서 지명하는 자는 고용 지원 사무소,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Unédic. 이하 같다], 국가 또는 L.5424-1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계산을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과 요건에 따라, 최고를 한 후에 영장을 발부한다. 채무자가 위 영장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위 영장은 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저당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L.2145-9조. 제2항.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일 년에 12일에서 18일의 범위 안에서 직업 교육 훈련의 차원에서 수급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대체 소득을 받는다.	L.2145-9조. 제2항. 이직한 근로자가 일 년에 12일에서 18일의 범위 안에서 직업 교육 훈련의 차원에서 수급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대체 소득을 받는다.
L.5312-13-1조.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서 부정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고용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서하고 인준을 받는다.	L.5312-13-1조. 고용 지원 사무소에서 부정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고용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서하고 인준을 받는다.
L.5411-1조. 구직 중인 자로서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구직자 명부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구직자의 자격을 갖는다.	L.5411-1조. 구직 중인 자로서 고용 지원 사무소에 구직자 명부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구직자의 자격을 갖는다.
L.5411-2조. 제2항. 구직자는 구직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통지한다.	L.5411-2조. 제2항. 구직자는 구직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 지원 사무소에 통지한다.
L.5411-4조.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해당 신청자의 체류종과 노동 허가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기관은 국가 기관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다.	L.5411-4조.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 지원 사무소가 해당 신청자의 체류종과 노동 허가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고용 지원 사무소는 국가 기관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다. 구직자 명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류종과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L.5411-6조. 당장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는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의하여 구직 지원을 받는다.	L.5411-6조. 당장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는 고용 지원 사무소에 의하여 구직 지원을 받는다.
L.5411-6-1조.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구직자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 또는 위에서 말한 기관과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공공 고용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이 함께 작성하고 갱신한다. 이 경우 개인별 재취업 계획의 작성과 갱신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전달한다.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구직자의 직업 교육 훈련, 숙련, 지식 및 경험, 개인적 및 가족 상황, 지역 노동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일자리의 종류와 특성 및 원하는 지역 그리고 기대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한다.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공공 고용 서비스의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조치들, 특히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직업 교육 훈련 및 이동성 지원에 관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L.5411-6-1조.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구직자와 고용 지원 사무소 또는 고용 지원 사무소와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공공 고용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이 함께 작성하고 갱신한다. 이 경우 개인별 재취업 계획의 작성과 갱신은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전달한다.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구직자의 직업 교육 훈련, 숙련, 지식 및 경험, 개인적 및 가족 상황, 지역 노동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일자리의 종류와 특성 및 원하는 지역 그리고 기대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한다.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필요한 경우 L.5422-1조 II 제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을 포함한다. 개인별 재취업 계획은 고용 지원 사무소가 공공 고용 서비스의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조치들, 특히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직업 교육 훈련 및 이동성 지원에 관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구직자에게 개인별 재취업 계획을 통지하는 서면에는 합리적인 일자리 제안을 승락하거나 거절하는 것과 관련된 구직자의 권리 및 특히 고용 지원 사무소가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p>L.5411-6-3조. 3개월 이상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 숙련과 경험에 부합하고 종전 임금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합리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보고, 6개월이 지나면 85퍼센트로 조정되고, 1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의 수준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면 합리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본다. 6개월 이상 실업인 자에게 출퇴근 각 최대 1시간 이내의 거리 또는 최대 3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구직자가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위 각 기간의 계산에 반영하여 그만큼 연장한다.</p>	<p>(삭제)</p>
<p>L.5411-6-4조. 본 관의 규정 및 L.5412-1조 제2호의 규정은 구직자에게 해당 지역과 해당 직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 등 법률 및 협약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서 구직 일자리를 전일제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단시간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없다.</p>	<p>L.5411-6-4조. 본 관의 규정 및 L.5412-1조 제2호의 규정은 구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과 해당 직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 수준. 다만 법정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 등 법률 및 협약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단시간 일자리. 다만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서 구직 일자리를 전일제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구직자의 직업 능력 및 숙련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
<p>L.5412-1조. 1.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개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3. (b)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 교육 훈련에 불참하거나 L.5311-2조에서 말하는 서비스 기관 중 하나가 제안하고 개인별 재취업 계획에 포함되는 구직 지원 활동에 불참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c) 정당한 이유 없이 L.5311-2조에서 말하는 서비스 기관 또는 이 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d) 일자리 또는 특정한 유형의 일자리에 적합하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노동력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의료 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e) 도제 계약 또는 인턴 계약의 제안을 거부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f) 본 편 제1권 제3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편입 활동 또는 보조금 일자리의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L.5412-1조. 1.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개 또는 확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3. (b)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 교육 훈련에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c) 정당한 이유 없이 L.5311-2조에서 말하는 서비스 기관 또는 이 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면담에 불참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d) 일자리 또는 특정한 유형의 일자리에 적합하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의료 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e) 구직 지원 활동에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f) L.5426-1-2조 II에서 말하는 이행의 현실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구직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한다.</p>
<p>L.5421-1조. 재취업 또는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에 더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노동 법전 L.1237-11조 내지 L.1237-15조 또는 건설업 법전 L.421-12-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및 노동 법전 L.1237-17조 내지 L.1237-19-1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로서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는 본 장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체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p>	<p>L.5421-1조. 재취업 또는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에 더하여,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는 본 장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체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p>

In Depth Analysis

개정 전	개정 후
<p>L.5421-2조. 대체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절에서 규정하는 실업 급여 제3절에서 규정하는 연대 수당 제4절에서 규정하는 특별 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타 수당 	<p>L.5421-2조. 대체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실업 급여[임금 근로자의 실업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절에서 규정하는 연대 수당[실업 부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절에서 규정하는 자영업자 실업 급여 및 특별 체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타 수당
<p>L.5421-3조. 제1항. 구직자로 등록한 자가 스스로 또는 L.5311-2조에서 말하는 기관 중의 하나의 제안에 따라서 일 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개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체 소득을 향유하기 위한 구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p>	<p>L.5421-3조. 제1항. 구직자로 등록한 자가 스스로 또는 L.5311-2조에서 말하는 기관 중의 하나의 제안에 따라서 일 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개 또는 확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체 소득을 향유하기 위한 구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p>
<p>L.5421-4조. 3. 사회보장법전 L.161-17-4조, L.351-1-1조, L.351-1-3조 및 L.351-1-4조 및 1999년도 사회 보장 예산안 제 41조 제3항 및 제7항의 적용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수급하는 자에게는 실업 급여의 지급을 중지한다.</p>	<p>L.5421-4조. 3. 사회보장법전 L.161-17-4조, L.351-1-1조, L.351-1-3조, L.351-1-4조, L.643-3조 II와 III 및 L.723-10-1조, 그리고 농어업 법전 L.732-18-1조 내지 L.732-18-3조 및 1999년도 사회 보장 예산안 제41조 제3항 및 제7항의 적용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수급하는 자에게는 실업 급여의 지급을 중지한다.</p>
<p>L.5422-1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노동 법전 L.1237-11조 이하 또는 건설업 법전 L.421-12-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및 노동 법전 L.1237-1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가운데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로서 연령 요건과 직전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실업 급여 수급권을 갖는다.</p>	<p>L.5422-1조. I.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로서 연령 요건과 직전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운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 급여 수급권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발적 이직 또는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고용 보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이직을 한 자 노동 법전 L.1237-11조 내지 L.1237-16조, 또는 건설업 법전 L.421-1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자 노동법전 L.1237-17조 내지 L.1237-19-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자 <p>II. 위 조항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L.1237-1조에서 말하는 사직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을 한 근로자로서 노동 능력이 있으며 구직 중인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역시 실업 급여 수급권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일 이전 취업에 관한 특별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직업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직 계획 또는 창업 계획이 있는 자. 전직 계획 또는 창업 계획의 진실성과 진지성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L.6323-17-6조에서 말하는 지역별 노사 공동 직업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신규)	<p>L.5422-1-1조. L.5422-1조의 Ⅱ에 따라 실업 급여를 향유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사직에 앞서 L.6111-6조에 따라 동조에서 말하는 기관 등에 직업적 전망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 다만 고용 지원 사무소 및 L.5314-1조에서 말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필요한 경우 직업적 전망에 관한 조언을 하는 기관 등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계약의 범위 안에서 전직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조언 기관 등을 도움을 얻어 L.5422-1조의 Ⅱ의 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을 작성한다.</p>
<p>L.5422-2조. 실업 급여의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나이 및 직전 취업 활동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과의 합의로 유급의 직업 교육 훈련 활동에 사용된 시간은 실업 급여의 지급 기간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한다.</p>	<p>L.5422-2조. 실업 급여의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나이 및 직전 취업 활동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급 기간은 수급자가 직업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삭제)</p>
<p>L.5422-3조. 제1항. 실업 급여는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수에 따라 계산하든지, 또는 L.5422-9조 및 L.5422-11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의 계산에 반영되는 보수에 따라서 계산한다.</p>	<p>L.5422-3조. 제1항. 실업 급여는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수에 따라 계산하든지, 또는 L.5422-9조 제1호 및 L.5422-11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의 계산에 반영되는 보수에 따라서 계산한다.</p>
<p>L.5422-4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실업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실업 급여 지급 청구권의 시효는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p>	<p>L.5422-4조. 이직한 근로자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실업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실업 급여 지급 청구권의 시효는 고용 지원 사무소에서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고용 지원 사무소가 실업 급여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서면에는 이의 제기예 관한 기간과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p>
<p>L.5422-9조. 제1항. 실업 급여의 재원은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총보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총당한다.</p>	<p>L.5422-9조. 제1항. 본 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실업 급여 및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의 기여금 2. 필요한 경우, 제4절 제3관에서 말하는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근로자들의 기여금 3. 필요한 경우, L.5422-13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기여금 4. 필요한 경우,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고용 보험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 범위의 해외 확장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기여금 5. L.54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귀속되는 일체의 조세. 특히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재정을 위하여 고려하다. <p>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기여금은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세전 총보수에 대하여 계산한다.</p>
<p>L.5422-10조. 제2항. 같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 의하여 납부된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계산을 위하여 공제될 수 있다.</p>	<p>L.5422-10조. 제2항. L.5422-9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 의하여 납부된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계산을 위하여 공제될 수 있다.</p>

In Depth Analysis

개정 전	개정 후
<p>L.5422-12조. 제2항. 고용 보험 협약은 근로 계약의 종류, 그 기간, 그러한 종류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유, 근로자의 나이 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기여율을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p>	<p>L.5422-12조. 제2항. 사용자의 기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 계약 및 L.1251-1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 파견 계약의 해지 건수, 사직 및 L.1251-1조 제2호에서 말하는 파견 근로 계약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근로자는 L.5411-1조에서 말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근로 계약의 종류, 그 기간 또는 그러한 종류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유 3. 근로자의 나이 4. 사업의 규모 5. 사업이 속해 있는 업종
<p>L.5422-14조. 제1항. 보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기여금의 계산에 반영되는 보수를 신고한다.</p>	<p>L.5422-14조. 제1항. 보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L.5422-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기여금의 계산에 반영되는 보수를 신고한다.</p>
<p>L.5422-16조. L.5422-9조, L.5422-11조 및 L.5424-20조에서 규정하는 기여금은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계산을 위하여 L.5427-1조에서 말하는 징수 기관이 징수하고 감독하며, 이 경우 임금 근로자 사회 보험료의 징수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p>	<p>L.5422-16조. L.5422-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L.5422-11조 및 L.5424-20조에서 규정하는 기여금은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계산을 위하여 L.5427-1조에서 말하는 징수 기관이 징수하고 감독하며, 이 경우 임금 근로자 사회 보험료의 징수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p>
<p>L.5422-20조. 제1항. 본 절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들은, L.5422-14조 내지 L.5422-16조 및 L.5422-25조를 제외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p>	<p>L.5422-20조. 제1항. 본 절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들은, L.5422-14조 내지 L.5422-16조, 본 관, L.5422-9조 제5호, L.5422-10조 및 L.5422-25조를 제외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p>
<p>(신규)</p>	<p>L.5422-20-1조.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의 승인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교섭하기 이전 또는 L.5422-25조에서 말하는 협약을 교섭하기 이전에 총리는 전국 차원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교섭 개요서를 이들 노동 조합과 사용자 단체에 교부한다. 이 교섭 개요서는 의 회에도 동시에 제출한다.</p> <p>교섭 개요서는 재정 추계에 관한 교섭 목표, 교섭 만료 시한 및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 보험 제도 개선 목표를 명시한다.</p> <p>교섭 개요서는 재정 추계가 근거하고 있는 거시경제 상황, 앞으로 다가 올 3 회계연도 동안 L.5422-9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일체의 조세의 예상 액을 제시한다. 다만 장차의 예산안 및 사회 보장 예산안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p> <p>본 조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p>
	<p>L.5422-20-2조. 고용 지원 사무소와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은 L.5422-20-1조 및 L.5422-25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의 작성 및 교섭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정보들을 국가 기관에 제공한다.</p>
<p>L.5422-21조. 제3항. 행정 관청의 승인을 받은 협약은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명령의 공고에 관한 요건에 따른다.</p>	<p>L.5422-21조. 제3항. 총리의 승인을 받은 협약은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명령의 공고에 관한 요건에 따른다.</p>

개정 전	개정 후
<p>L.5422-22조. 고용 보험 협약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전국 및 전산업 단위에서 교섭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위 협약은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을 포함하면 안 된다. 특히 고용 감독, 일자리의 수급 균형, 이직한 근로자의 감독, 이직한 근로자의 직업 소개 또는 재취업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에 반하면 안 된다.</p>	<p>L.5422-22조.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과 사용자 단체 사이에 전국 및 전산업 단위에서 교섭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위 협약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위 협약은 재정 추계와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L.5422-20-1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에서 정의하는 고용 보험 제도 개선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p>
<p>L.5422-23조. 고용 보험 협약이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모두에 의하여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반대의 의사가 표명된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담당하는 장관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p>	<p>L.5422-23조. 고용 보험 협약이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모두에 의하여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반대의 의사가 표명된 경우가 아닌 한 총리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p>
<p>L.5422-24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은 징수된 액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 보험 협약으로 정하는 부분을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예산에 충당하며, 그 배분은 위 기관의 이사회에서 매년 정한다.</p>	<p>L.5422-24조. I. 재원은 재원의 액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 보험 협약으로 정하는 부분을 고용 지원 사무소의 예산에 충당하며, 그 배분은 위 기관의 이사회에서 매년 정한다. II. 본 조의 I의 적용과 관련하여 L.5422-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한 평가는 이 기여금에 적용될 수 있는 감면 제도의 적용 이전을 의미한다.</p>
<p>L.5422-25조.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은 매년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 3개년 재정 전망을 의회와 정부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고용과 실업의 변동에 관한 경기 요소가 고용 보험 재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시한다. 정부는 위 보고서 및 기타 처분 가능한 정보들에 기초하여 12월 31일 이전에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의회에 고용 보험의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기 재정 균형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 및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한다.</p>	<p>L.5422-25조. 정부는 매년 늦어도 10월 15일 이전에 L.5427-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의회에 고용 보험의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기 재정 균형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 및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한다. 위 보고서에서 고용 보험의 재정 추계와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추계 사이에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경우, 또는 공공 재정 관리법의 범위에서 입법자가 정한 재정 추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 총리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대하여 총리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의 개정을 통해서 위 격차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총리는 L.5422-20-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위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교섭 개요서를 전달한다. 본 절 제5관의 규정들은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p>
<p>L.5422-2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총리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대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협약의 승인을 만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는 L.5422-20조 마지막 항을 적용한다.</p>	<p>L.5422-2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총리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노동 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대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협약의 승인을 만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는 L.5422-20조 마지막 항을 적용한다.</p>
<p>L.5423-1조. 실업 급여 또는 L.5423-7조에서 규정하는 직업 교육 훈련 종료 수당 지급권이 만료된 실업자로서 이전 취업 기간 및 재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 연대 수당 지급권을 갖는다.</p>	<p>L.5423-1조. 실업 급여 지급권이 만료된 실업자로서 이전 취업 기간 및 재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 연대 수당 지급권을 갖는다.</p>

In Depth Analysis

개정 전	개정 후
<p>L.5423-4조. 직업 수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연대 수당을 받기 위한 직전 취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협약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연대 수당의 직전 취업 요건 및 수급 기간과 수급율에 대해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p>	(삭제)
<p>L.5424-20조. 영화, 방송 또는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지급되는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의 조정에 따라, 위 실업 급여는 L.5422-9조에서 규정하는 기여금 외에 해당 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특별 기여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위 특별 기여금은 고용 보험 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상한액의 범위에서 총보수에 대하여 계산한다.</p> <p>위 특별 기여금은 L.5422-9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 L.5427-1조에서 말하는 징수 기관이 징수하고 감독한다. 특별 기여금의 징수에 관한 분쟁은 L.5422-16조에서 규정하는 관할 규칙에 따른다.</p>	<p>L.5424-20조. 영화, 방송 또는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이직한 자에게 지급되는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의 조정에 따라, 위 실업 급여는 L.5422-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기여금 외에 해당 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특별 기여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위 특별 기여금은 고용 보험 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상한액의 범위에서 총보수에 대하여 계산한다.</p> <p>위 특별 기여금은 L.5422-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기여금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 L.5427-1조에서 말하는 징수 기관이 징수하고 감독한다. 특별 기여금의 징수에 관한 분쟁은 L.5422-16조에서 규정하는 관할 규칙에 따른다.</p> <p>본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 기여금에 속하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의 해지는 L.5422-12조 제1호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위 제1호의 적용에 따른 기여금의 할증 또는 할인은 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p>
<p>L.5424-21조. 제1항. 영화, 공연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인 및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실업 급여 수급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민 연대의 차원에서 특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p> <p>제4항. 위 특별 실업 수당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그 관리는 국가와 체결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담당한다.</p>	<p>L.5424-21조. 제1항. 영화, 공연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인 및 근로자로서 이직한 자가 실업 급여 수급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민 연대의 차원에서 특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p> <p>제4항. 위 특별 실업 수당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그 관리는 국가와 체결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고용 지원 사무소가 담당한다.</p>
<p>L.5424-22조. II. 제2항. 교섭 개요서는 재정 추계 및 고용 보험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의 준수에 관한 교섭 목표를 명시한다.</p> <p>제3항. 공연 예술 산업 엔터테인먼트의 고용 보험에 관한 특칙을 정하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 조합이 이를 정한다.</p>	<p>L.5424-22조. II. 제2항. 교섭 개요서는 재정 추계 및 고용 보험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의 준수에 관한 교섭 목표를 명시한다. 이때, L.5422-20-1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와 재정 추계를 준수한다.</p> <p>제3항. 공연 예술 산업 엔터테인먼트의 고용 보험에 관한 특칙을 정하는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L.5422-22조 제2항에 정한 요건에 따라 전국 및 전산업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 조합이 이를 정한다.</p>
<p>L.5424-23조. I. 전문가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 사무를 대표하는 자,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의 대표자,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p> <p>III. L.5424-20조에서 말하는 산업 전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가 위원회는 이 협약이 L.5424-22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에서 제시한 재정 추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p> <p>IV.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 및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은 전문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p>	<p>L.5424-23조. I. 전문가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 사무를 대표하는 자, 고용 지원 사무소의 대표자,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p> <p>III. L.5424-20조에서 말하는 산업 전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가 위원회는 이 협약이 L.5424-22조 및 L.5422-20-1조에서 말하는 교섭 개요서들에서 제시한 재정 추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p> <p>IV. 고용 지원 사무소 및 L.5427-1조에서 말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은 전문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제5편 제4권 제2장 제4절</p> <p style="text-align: center;">제4관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p> <p>L.5424-24조. 사회 보장 법전 L.611-1조, 농어업 법전 L.722-1조 및 L.731-23조, 사회 보장 법전 L.311-3조의 4호 내지 6호, 11호, 12호, 23호, 30호 및 35호, 사회 보장 법전 L.382-1조에서 말하는 자는 본 관의 적용을 위하여 자영업자로 본다.</p> <p>L.5424-25조. 직전 취업 상태가 자영업자였던 자로서 소득, 직전 취업 기간, 직전 취업 소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법전 L.641-1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업이 청산 절차 개시 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상법전 L.64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은 제외한다. 2. 상법전 제6권 제3장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로서, 법원에 의하여 회생 계획의 채택이 상법전 L.631-19-1조에 따른 이사의 교체에 구속되는 경우. <p>L.5424-26조. L.5422-4조와 L.5422-5조는 자영업자 실업 급여에도 적용된다.</p> <p>L.5424-27조.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 수급권을 위한 자원, 직전 취업 기간, 직전 취업 소득에 관한 요건 등 본 관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액과 수급 기간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2. 자영업자 실업 급여와 실업 급여의 조정에 관한 시행 방안은 L.5422-20조에서 말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p>L.5424-28조. 자영업자의 실업 급여를 위한 자원은 L.5422-9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일체의 조세로만 충당한다.</p>
<p>L.5425-1조. 본 장의 급여는, 악천후로 인하여 이직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하여 제4절 제2관에서 규정하는 급여를 제외하고, 일시적인 취업 또는 부분 취업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해지는 요건과 한계의 범위 안에서 수급하는 사회 보장 급여 또는 공공 부조 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 급여의 경우에는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협약 	<p>L.5425-1조. 본 장의 급여는, 악천후로 인하여 이직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하여 제4절 제2관에서 규정하는 급여를 제외하고, 일시적인 취업 또는 부분 취업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해지는 요건과 한계의 범위 안에서 수급하는 사회 보장 급여 또는 공공 부조 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 급여 및 자영업자 실업 급여의 경우에는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협약
<p>L.5425-9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대체 소득 수급권자인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 관청이 승인하는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p>	<p>L.5425-9조. 이직한 근로자로서 대체 소득 수급권자인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 관청이 승인하는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p>

개정 전	개정 후
(신규)	<p align="center">제5편 제4권 제2장 제6절</p> <p>제1관3 사직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특칙</p> <p>L.5426-1-2조. I. L.5421-3조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가 구직자로 등록하고 L.5422-1조의 II의 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전직 계획을 실현하는 기간 동안에는 L.5422-1조의 II에 따라 실업 급여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직 노력 요건이 충족된다. II. 고용 지원 사무소는 실업 급여 수급권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L.5422-1조의 II의 2호에서 말하는 전직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현실성을 감독한다. 위 필요한 조치의 현실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하지 못한 자는 L.5412-1조의 3호의 (f)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구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L.5422-20조에서 규정하는 고용 보험에 관한 협약은 실업 급여 수급권자가 잔여 실업 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p>
<p>L.5426-2조. L.5412-1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L.5412-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의하여 대체 소득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삭감한다.</p>	<p>L.5426-2조. L.5412-1조 제1호 내지 제3호, L.5412-2조 및 L.5426-1-2조 II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고용 지원 사무소에 의하여 대체 소득의 지급을 중지한다.</p>
<p>L.5426-5조.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소송 및 벌칙의 적용과 별도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고의로 부정확하게 또는 불충분하게 신고를 하거나 급여의 수급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L.5426-5조.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소송 및 벌칙의 적용과 별도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고의로 부정확하게 또는 불충분하게 신고를 하거나 급여의 수급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 지원 사무소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L.5426-6조. 과징금은 조세 및 국유 재산과 무관한 채권으로서 국가가 징수한다.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부당 수급의 피해를 입은 기관 또는 기금에 이월한다.</p>	<p>L.5426-6조. 과징금은 고용 지원 사무소가 징수한다. L.5426-8-2조의 규정은 과징금의 징수에 적용된다.</p>
<p>L.5426-7조. 행정 관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부정 수급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은 당연히 취소된다. 행정 관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같은 사유로 벌금이 선고된 경우 과징금은 벌금에 합산한다.</p>	<p>L.5426-7조. 고용 지원 사무소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부정 수급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은 당연히 취소된다. 고용 지원 사무소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같은 사유로 벌금이 선고된 경우 과징금은 벌금에 합산한다.</p>
<p>L.5426-8-3조. 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은 스스로의 계산, 국가의 계산 또는 L.5424-1조에서 말하는 사용자(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계산을 위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 보조 및 일체의 급여에 대한 환급 조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p>	<p>L.5426-8-3조. 고용 지원 사무소는 스스로의 계산, 국가의 계산 또는 L.5424-1조에서 말하는 사용자(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계산을 위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 보조 및 일체의 급여에 대한 환급 조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p>

개정 전	개정 후
<p>L.5426-9조. L.5426-2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대체 소득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삭감될 수 있는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p> <p>L.5312-1조에서 말하는 기관이 부당 수급된 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및 매월 지급되는 각종 명목의 급여 총액에서 부당 수급액의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정한다.</p> <p>행정 관청이 L.542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p>	<p>L.5426-9조. L.5426-2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대체 소득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요건 및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한다.</p> <p>고용 지원 사무소가 부당 수급된 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및 매월 지급되는 각종 명목의 급여 총액에서 부당 수급액의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정한다.</p> <p>고용 지원 사무소가 L.542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p>
<p>L.5427-1조. 제2항. 실업 급여 사무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계산을 위하여 고용 지원 사무소에서 담당한다.</p> <p>제3항. L.5422-9조 및 L.5422-11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의 징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계산을 위하여 사회 보험료와 가족 수당 보험료 징수청 및 사회보장법전 L.213-1조 및 L.752-1조에서 말하는 사회 보험 관리 공단에서 담당한다.</p>	<p>L.5427-1조. 제2항. 실업 급여 및 자영업자 실업 급여 사무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계산을 위하여 고용 지원 사무소에서 담당한다.</p> <p>제3항. L.5422-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L.5422-11조에서 말하는 기여금의 징수는 고용 보험 관리 기관의 계산을 위하여 사회 보험료와 가족 수당 보험료 징수청 및 사회 보장 법전 L.213-1조 및 L.752-1조에서 말하는 사회 보험 관리 공단에서 담당한다.</p>
<p>L.5428-1조. 정리 해고 후 재고용 지원 계약의 차원에서 수급한 급여, 실업 급여 및 조기 은퇴 급여는 임금과 동일한 조건과 한계 안에서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다.</p> <p>위 급여들 및 특별 연대 수당 및 일시 대기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를 면제한다.</p>	<p>L.5428-1조. 고용 지원 사무소가 지급하는 수당, 부조 및 일체의 급여는 양도 금지 및 압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과 동일한 요건과 한계 안에서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다.</p> <p>위 급여들 및 특별 연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를 면제한다.</p>
<p>L.5429-2조. L.5422-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용자로서 3년의 기간 안에 누범인 경우에는 2년의 징역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p>	<p>L.5429-2조. L.5422-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용자로서 3년의 기간 안에 누범인 경우에는 사회 보장 법전 L.24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처한다.</p>